

제1752호

2020. 3. 27.(금)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54

영등포구보

공 고

· 제2020-574호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54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	---	-----------------	---	-----------------	---	---------------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32-2020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574호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추가된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연번	안건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붙임 상정안건 3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0.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을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구민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내용 신설

- 1)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5.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0. 3. 24. ~ 3. 26./ 3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알가정 양립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취업 지원 사업)</p> <p>1. ~ 4. (생 략)</p> <p><신 설></p> <p>5. (생 략)</p>	<p>제6조(취업 지원 사업)</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2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비용 발생: 구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을 추진
 -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2. 비용추계 기준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구민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 1일 5만원, 최대 25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급 일수,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산출내역: 1,600명 × 5일 × 50,000원 = 400,000천원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구비	400,000					400,000
	○						
	소계(a)	400,000					
세출	○가족돌봄비용	400,000					400,000
	○						
	소계(b)	400,000					
□ 총 비용(a-b)		0					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시 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400,000					400,000
합계			400,000					400,000

6. 추가의견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휴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추진으로 더 많은 구민들에게 취업 기회 지원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 이정왜
연 락 처	02-2670-410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0.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사유

-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함.

2.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비 고
계	680,800,895	670,292,925	10,507,970	1.57%	
일반회계	652,077,928	641,569,958	10,507,970	1.57%	
특별회계	28,722,967	28,722,967	0	-	
의료급여	461,270	461,270	0	-	
건축안전	660,480	660,480	0	-	
주 차 장	27,601,217	27,601,217	0	-	

3. 주요 재원

○ 일반회계	10,507,970천원
- 국시비보조금	2,071,970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36,000천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0.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신규 편성하여상공인들의 자금 경영난 해소에 기여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결 요청함

2.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기금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9,803,600	6,722,600	3,081,000	합 계	9,803,600	6,722,600	3,081,000
전입금	3,081,000	-	3,081,000	비용자성 사업비	82,600	1,600	81,000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3,491,600	3,491,600	-	융자성 사업비	8,000,000	5,000,000	3,000,000
예치금 회 수	3,175,000	3,175,000	-	예치금	1,721,000	1,721,000	-
이자수입	56,000	56,000	-				